



학생 행사 안전관리 규칙

규정번호	3-4-25
제정일자	2016.03.01
개정일자	2017.03.01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규칙은 학생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안전한 학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집단 활동”이란 대학 단위(대학전체, 총학생회, 취미동아리) 또는 학부(과) 단위(학과 학생회, 전공동아리)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OT, MT,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를 하는 모든 활동으로 대학 단위 활동은 학생서비스센터, 학부(과) 단위 활동은 학부(과)에 신고하여 허가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03.01>
5. “인권침해행위”란 대학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03.01>

제4조(적용범위) ①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에 적용한다.

1. 대학본부, 각 학부(과), 총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한다.

② 대학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적용한다.

1. 대학 입학 전 신입생과 재학생 등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대학 측이 주관하여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 1)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2)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나.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1)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확인-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 2)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 기관과의 계약을 권장한다
 -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1)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2)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3) 계약조건으로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적시할 것
 - 나.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1) 차량 계약 시 업체에 배차된 차량 운전자의 적격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것
 -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가.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 1) 기존에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배상) 적용 범위 확인할 것-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입학 전 신입생 등에 대해서도 보상(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 보상범위가 사고 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 확인
 - 나.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1)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4. 행사 전 답사
 - 가. 보험 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 확인
 - 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1)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확인
 - 5.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가.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예방
 - 나.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를 대비한 정보 제공
 - 1) 숙소 및 행사장소 소화기 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정보 제공
 - 6. 필요시 교직원이 동행
 - 가. 학생들이 동행을 요청하거나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교직원 동행
- ②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이 주관하여 실시
 - 가.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
2.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
 - 가.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
3.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동행
- ③ 집단 활동 시 인권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17.03.01>
 1. 대학의 모든 집단 활동은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책임자는 집단 활동 전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인권침해사고 발생시 피해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3.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인권침해 발생 집단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피해상황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03.01>

제6조(안전사고 예방 점검) 학생 행사 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행위 예방은 체크리스트[별지 제1호 서식]를 활용하여 점검한다.<개정 2017.03.01>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조치 사항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셨습니다가?			
학생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다가?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다가?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2.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조치 사항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3. 화재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조치 사항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4. 인권침해행위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조치 사항
인권 침해 예방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뺨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신체적 가해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까?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까?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가해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까?		
피해 신고	피해발생시 집단 활동 책임자 연락처를 안내하였습니까?		
	피해발생시 대학 내 피해신고 부서 연락처를 안내하였습니까?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처벌조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